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388호(號) 1928(昭和 3)년 4월 18일 수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52호(號)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및 항로(航路) 간(間) 여객 및 수·소하물 연대운송규칙(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 제1조(條)에 의하여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 및 특종취급사항(特種取扱事項)을 1928(昭和 3)년 5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1928(昭和 3)년 4월 1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여객(旅客), 수·소하물(手小荷物)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 및 특종취급사항(特種取扱事項)

제1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및 항로(航路) 간(間) 여객 및 수·소하물 연대운송규칙[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하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 명(名)과 그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하는 범위(範圍) 및 특종취급사항(特種取扱事項)은 별표(別表)와 같이 함. 단(但) 연대운송의 취급(取扱)을 하는 역소(驛所)는 아래[左]의 각(各) 호(號)에 의(依)함.

1 여객(旅客),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함이 가(可)한 역소(驛所)는 관계(關係) 역소(驛所)에 이것을 게시(揭示)함.

2 다른 철도(鐵道) 또는 항로(航路)와의 접속역소(接續驛所)에서는 당해(當該) 철도 또는 항로와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3 간이역(簡易驛) 및 정류소(停留所)에서는 연대운송의 취급을 하지 아니함.

제2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하는 항로(航路)가 조선총독부철도선(朝鮮總督府鐵道線) 간(間)에 개재(介在)한 때는 조선총독부철도선(朝鮮總督府鐵道線) 간(間)에서 당해(當該) 항로(航路)를 경유(經由)한 연대운송(連帶運送)의 취급(取扱)을 함.

제3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하는 사설철도(私設鐵道)로서 별도(別途)로 정(定)한 것은 그 상호간(相互間)에서 조선총독부철도선(朝鮮總督府鐵道線)을 경유(經由)한 연대운송의 취급을 함.

사설철도(私設鐵道)가 연속(連續)하지 아니하는 수개(數箇)의 선로(線路)를 유(有)한 경우 그 상호간(相互間)에서도 역시 동일(同一)함.

제4조(條) 전(前) 두 조[二條]의 경우에 있어서 취급(取扱) 종별(種別)의 제한(制限)은 조선

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관계(關係)하는 철도(鐵道) 또는 항로(航路) 간(間)에서 취급제한(取扱制限)의 범위(範圍) 내(內)로 함.

(별표[別表])

철도(鐵道), 항로(航路) 명(名)	접속역 (接續驛)	취 급 종 별(取扱種別)	특종취급사항 (特種取扱事項)
1조선철도주식회사(朝鮮鐵道株式會社)			
경남선(慶南線)	마산선(馬山線) 마산(馬山)	여객(旅客),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	별도(別途)로 정(定)한 수속(手續)에 의하여 신천온천행(信川溫泉行) 할인왕복승차권(割引往復乘車券)을 발매(發賣)함
경동선(慶東線)	경부본선(京釜本線) 대구(大邱)		
경북선(慶北線)	경부본선(京釜本線) 김천(金泉)		
충북선(忠北線)	경부본선(京釜本線) 조치원(鳥致院)		
황해선(黃海線)	경부본선(京釜本線) 사리원(沙里院)		
함남선(咸南線)	함경남부선(咸鏡南部線) 함흥(咸興)		
함북선(咸北線)	함경북부선(咸鏡北部線) 고무산(古茂山)		
2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경부본선(京釜本線) 천안(天安)		별도(別途)로 정(定)한 수속(手續)에 의하여 온양온천행(溫陽溫泉行) 할인왕복승차권(割引往復乘車券)을 발매(發賣)함
3개천철도주식회사(价川鐵道株式會社)	경의본선(京義本線) 신의주(新義州)		
4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경원선(京元線) 철원(鐵原)		
5도문철도주식회사(圖們鐵道株式會社)	함경북부선(咸鏡北部線) 회령(會寧)		
6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경원선(京元線) 원산(元山)	여객(旅客),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 왕복승차선권(往復乘車船券)은 발매(發賣)를 하지 아니함 가격표기(價格表記)를 첨부(添附)한 수하물 및 소하물급으로서 물에 넣은 활어(活魚), 귀중품(백동화[白銅貨], 생사[生絲], 견사[絹絲], 견직물[絹織物], 동[同] 견사로 만든 물, 동[同] 견직물로 만든 직물을 제除])함), 동물, 차량류, 사체, 모자는 취급을 하지 아니함	1사(社) 항로에 있어서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47조 및 제50조의 할인율은 각 등(等) 2할(割)로 함 2사(社) 항로에 있어서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62조, 제65조 및 제68조의 할인율은 3등에 한하여 2할로 함 3사(社) 항로에서는 일본(각 식민지를 포함함) 관리, 승려, 선교사에 대하여 1, 2등에 한하여 2할을 저감(低減)함 4사(社) 항로에서는 일본 육해군 폐병(廢兵: 보호자를 요하는 것이 될 때는 1인에 한함)에 대하여 각 등(等) 운임을 2할 저감함 5사(社) 항로에서는 단체여행자에 대하여 3등운임을 20인 이상 1할 저감함 6승차·선권(乘車船券)의 통용기간은 철도영업 마일 수에 대하여 조 선 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5조에 의하여 산출한 것에 4일을 추가함으로 함 7상급환승(上級換乘) 또는 승차선권 분실의 신청이 유(有)한 때는 각 선(線) 각별히 이것 취급을 함으로 함 8단체운송의 경우, 사(社) 항로에서는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83조의 무임금(無賃金) 감독자를 인정하지 아니함
7아파국공동기선주식회사(阿波國共同汽船株式會社)	경인(京仁線) 인천(仁川)	여객, 수하물 왕복승차선권은 발매를 하지 아니함 가격표기를 첨부한 수하물은 취급을 하지 아니함	1사(社) 항로에 있어서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47조 및 제50조의 할인율은 각 등 3할로 함 2사(社) 항로에 있어서 조선총독부 및 관동청(關東廳)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등(等) 운임을 1할5푼 저감함 3사(社) 항로에서는 외교관 및 영사관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1, 2등 운임을 1할5푼 저감함 4사(社) 항로에서는 일본 육해군 폐병(廢兵: 보호자를 요하는 것이 될 때는 1인에 한함)에 대하여 각 등 운임을 2할 저감함 5사(社) 항로에서는 신관(神官), 승려, 선교사에 대하여 1, 2등 운임을 2할 저감함 6사(社) 항로에서는 단체여행자에 대하여 3등운임을 20인 이상 2할, 40인 이상 2할 저감함 7승차선권의 통용기간은 철도구간 영업 마일 수에 대하여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5조에 의하여 산출한 것에 4일을 추가함으로 함 8상급환승 또는 승차선권 분실의 신청이 유(有)한 때는 각 선 각별히 이것 취급

			을 함으로 함 9단체운송의 경우, 사(社) 항로에서는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83조의 무임급 감독자를 인정하지 아니함
8오사카상선주식회사 [大阪商船株式會社]	경원선(京元線) 원산(元山) 청진선(淸津線) 청진(淸津)	여객, 수하물, 소하물 왕복승차선권은 발매를 하지 아니함. 가격표기를 첨부한 수하물 및 소하물급으로서 물에 넣은 활어, 귀중품(백동화, 생사, 견사, 견직물, 동조물, 동직물을 제함), 동물, 차량류, 사체, 모자는 취급을 하지 아니함	1사(社) 항로에 있어서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47조 및 제50조의 할인율은 각 등 2할로 함 2사(社) 항로에 있어서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62조, 제65조 및 제68조의 할인율은 3등에 한하여 2할로 함 3사(社) 항로에서는 일본(각 식민지를 포함함) 관리, 승려 및 선교사에 대하여 1, 2등운임을 2할 저감함 4사(社) 항로에서는 일본 육해군 폐병(廢兵: 보호자를 요하는 것이 될 때는 1인에 한함)에 대하여 각 등 운임을 2할 저감함 5사(社) 항로에서는 단체여행자에 대하여 3등운임을 20인 이상 1할 저감함 6승차선권의 통용기간은 철도영업 마일 수에 대하여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5조에 의하여 산출한 것에 4일을 추가함으로 함 7상급환승 또는 승차선권 분실의 신청이 유(有)한 때는 각 선 각별히 이것 취급을 함으로 함 8단체운송의 경우, 사(社) 항로에서는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 제83조의 무임금 감독자를 인정하지 아니함